

“기획자 내지 주최자”(이하 A라 함)와 “작가”(이하 B라 함)는 “퍼포먼스(작품)”(이하 작품이라 함)와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# 제1조 계약의 목적

본 계약은 전시/작품과 관련하여 A와 B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용어의 정의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작품 “작품”이라 함은, 본 전시에서 B가 맡은 퍼포먼스와 그에 소속된 전시물 및 오브제 등을 아울러 지칭한다.
- ② 오브제 “오브제”라 함은, 본 작품에서 B가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사물을 지칭한다.
- ③ 전문 인력 “전문 인력”이라 함은, 미술 전시 및 공연 업계에서 운송, 설치, 철수, 조명, 음향, 영상, 목공 등 본 계약에서 언급하는 업무를 실제로 지속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개인을 지칭한다.
- ④ 동선 “동선”이라 함은, B의 작품의 이동 경로 및 관객의 이동 경로를 아울러 지칭한다.
- ⑤ 퍼포머 “퍼포머”라 함은, 개인의 인격과 신체를 통해 퍼포먼스가 실재할 수 있도록 직접 행위 하는 모든 출연자를 지칭한다.

### 제3조 작품 개요

본 계약 대상이 되는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작품명 \_\_\_\_\_
- ② 작품 일정 \_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부터 \_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까지
- ③ 작품 횟수 총 \_\_\_\_회 (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, \_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)
- ④ 실연 장소 \_\_\_\_\_

### 제4조 계약 기간

본 계약 기간은 A와 B가 본 계약서 체결일부더 <\_\_\_\_\_>전의 종료 후 1달까지로 한다.

### 제5조 작품 지원

- ① A는 B에게 작품 참여에 대한 대가로 금 \_\_\_\_\_만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본 계약 체결일부더 \_\_\_\_일 내에 B에게 지급한다.
- ② A는 B의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을 B에게 지급하거나 B가 지정하는 제3자(업체)에게 대리 지급 한다. 이때 제작 비용의 적정성을 상호 검토하여 정하고, 최종 지급액과 지급 방식을 협의하여 \_\_\_\_일 내에 지급하도록 한다.
- ③ 작품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A는 B에게 발생된 비용에 대해 지급한다.

### 제6조 A의 의무와 권리

- ① A는 전시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전시기간 내 본 작품을 B와 합의한 장소와 일정, 회차에 따라 실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 그러나 B와 협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작품을 실연 및 전시하지 않는다.
- ② A는 B가 작품 제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운송 총괄

필요한 기기와 실연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.

- 실연 공간
- 대기 공간
- 조명
- 영상장비
- 음향장비
- 냉난방 장치
- 기타

- ③ A는 B에게 공간 사용 규정 및 제약 등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④ A는 무대 설치 및 영상, 음향 컨트롤 등 원활한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.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B가 스스로 필요 인력을 섭외하는 경우, A는 B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.
- ⑤ A는 B를 포함한 모든 퍼포머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작업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.
  - ⑤-① A는 B를 포함한 모든 퍼포머가 분장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구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.
  - ⑤-② A는 작품의 특성을 전제로 관객 안내 및 동선의 설계에 대해 B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.
  - ⑤-③ A는 작품의 시간과 장소, 동선 등 원활한 작품 관람을 위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, 현장에서 관객에게 고지할 진행의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A와 B가 협의하여 정한다.
  - ⑤-④ A는 B에게 작품 장소 주변에 위치한 다른 작품들의 설치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협의하여, B의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작품의 영상 및 사운드를 조정하여 B가 의도한 표현과 관객의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.
  - ⑤-⑤ A는 B와 사전 협의하여 관객에 의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는 고지를 작품 시작 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다.
- ⑥ A와 B는 어떠한 경우든 서로를 포함하여 모든 퍼포머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위계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.
  - ⑥-① A와 B는 서로를 포함하여 모든 퍼포머의 신체를 허락 없이 터치하지 않으며, 퍼포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.
  - ⑥-② A와 B는 서로에게 술자리 등 사적인 접대를 요구하지 않는다.
  - ⑥-③ A와 B는 서로에게 업무 내용이 아닌 용건으로 늦은 밤이나 취한 상태 등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락하지 않는다.
  - ⑥-④ A는 자신을 비롯한 A의 관리 감독을 받는 모든 직원 및 관계자로부터 B를 포함한 모든 퍼포머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- ⑦ A는 본 작품의 저작자인 B의 예술적 견해와 창작의 권한을 존중한다.
  - ⑦-① A는 작품의 의상, 무대, 내용 등 작품을 구체적으로 창조하는 권한이 B에게 속해있음을 존중한다. 작품 실연의 방식에 대하여 A와 B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, A는 작품 발표일 4주 전까지 B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 작품 발표일 4주 전 이후부터는 작품의 원활한 진행과 완성을 위해 A는 작품 실연의 방식을 B에게 일임한다.
  - ⑦-② A는 B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여야 하며, B가 외압에 의한 권력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.

- ⑧ A는 B의 아티스트 이름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작품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해야 하며, 표기의 크기, 위치 및 방법 등은 A가 결정하되 사전에 B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 티저 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⑨ A는 B에게 증정용 티켓 \_\_\_매와 홍보물 및 출판물 \_\_\_부를 B에게 무상 제공한다.
- ⑩ A가 B에게 작품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, A는 원작자로부터 작품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B가 국내 및 국외에서 제3자로부터 소송, 청구, 이의 제기, 형사고소 등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 A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(변호사 비용 포함)으로 B를 면책시키며, 그로 인한 B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.
- ⑪ A는 작품과 관련한 출판물 및 온라인 페이지 등에 이메일 주소 등 B가 제공하는 작가 연락처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.

**제7조 B의 의무와 권리**

- ① B는 A에게 공간에서 이루어질 작품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.
- ② B는 작품에 필요한 오브제의 상태를 운송을 위한 포장 직전 촬영하여 A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B는 작품 제작 및 실연 주체로서 합의한 운송, 설치 및 실연 일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.
- ④ B는 작품의 기술적인 부분과 작동에 대한 책임이 있고,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목록과 스케줄, 기타 필요사항과 작품 유지에 필요한 작동 매뉴얼을 A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⑤ B는 아티스트 토크 등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A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. 이때 A는 B의 전문성을 이용한 작품 외 노동을 인정하고 B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대가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⑥ B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, 아티스트 노트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A가 작품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 촬영, 매체 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.
- ⑦ B는 작품 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B가 제공한 이미지, 초상, 성명,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부여한다.
- ⑧ B는 기획자인 A의 기획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작품을 구상해야 한다. 또한 B는 A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,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작품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의무가 있다.
- ⑨ B는 작품이 B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,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A의 증빙을 갖춘 손해는 B가 책임지기로 한다.

**제8조 작품 유지 및 보수**

- ① A는 작품에 사용되는 오브제가 직사광선 및 더위와 추위 등 외부환경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, 전시 기간 동안 작품의 정상적인 작동과 최초 설치 컨디션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.
- ② A는 임의로 작품의 원형과 액자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.
- ③ A는 운송, 설치, 전시, 철수 전 과정의 작품의 분실, 도난, 물리적 파손 등 기본적인 보장 내용 이외에 B가 알려주는 작품과 장비, 전시 형태 등의 특수조건에 대해서도

작품의 유지와 보수에 책임이 있다. 단, B가 알려주지 않은 요건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의 의무가 없다.

- ④ B는 작품 보수, 유지를 위한 매뉴얼을 A에게 제공하며, 문제 발생 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
- ⑤ A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작품 파손이나 변형이 발생한 경우 즉시 B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.

#### 제9조 2차적 저작물의 사업화

A가 작품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, 상업적 목적으로 CD, DVD, 초상권 등을 사용한 제품을 제작, 판매(2차적 저작물의 사업화)하고자 할 경우 A는 사업화 조건과 방식에 대하여 B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한다.

#### 제10조 권리의 귀속

작품과 관련한 스틸 사진, 영상물,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B에게 있다. 단, 본 전시와 관련한 제작물(도록, 리플릿, 홈페이지 등)의 이용권은 홍보 기간을 포함하여 전시 종료 후 \_\_\_일까지 A에게 허용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계약의 변경

- ① 전시 장소 및 날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A는 B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- ② 전시 계약기간의 작품 발표 일정을 초과할 경우, A는 B에게 \_\_\_일 이전에 고지하고 합의하여야 하고, 그로 인해 B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전시 종료 후 \_\_\_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A가 B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워크숍 진행 등 추가 역할을 요구할 경우 A는 B와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비용 및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본 계약의 내용은 A와 B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

- ① 제5조에서 명시한 A의 의무 불이행으로 B의 작품 실연이 곤란한 경우, B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B가 지급받은 모든 비용이나 대가의 반환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. 또한 A는 아직 미지급된 대가를 B에게 지불해야 한다.
- ② B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연에 불참하여 전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A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책임과 보험

- ① A는 B의 작품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A는 B의 작품이 보관된 장소를 떠나 다시 반납되기까지 발생한 분실 및 도난, 파손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불가항력

- ① 퍼포머의 사망이나 질병, 지진, 화재, 수해,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, 전쟁, 내란, 폭동, 전염병의 창궐, 기타 A와 B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, A와 B는

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-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A와 B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15조 비밀유지**

A와 B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단, 본 전시 과정에서 구조적 불평등 문제,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문제 등 예술계 전체의 공익을 위협하는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,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공론화는 논외로 한다.

**제16조 양도 금지**

A와 B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.

**제17조 분쟁 해결**

A와 B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이로써 해결되지 않을 때는 B 주소지의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18조 효력 발생 등**

-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와 B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,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,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 
 A와 B가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.

\_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      A \_\_\_\_\_(서명/인)      B \_\_\_\_\_(서명/인)

예금주 \_\_\_\_\_  
 은행명 \_\_\_\_\_  
 계좌번호 \_\_\_\_\_

자문 협력    김종휘 Kim Jong Hwi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로 위에 Lo Wie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류한길 Ryu Hankil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백경태 Kyongtae Paek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민혜 Meene An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현준 Hyunjoon Jang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홍석 Jang Hongseok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하장호 Ha Jangho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홍태림 Hong Taelim  
 디자인        이도진 Dozin Lee